

영등포구의회
제139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2008. 9. 23

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
(專 門 委 員)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(안)』

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(안)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■ 제안일자 및 제안자

- 제안일자 : 2008. 9. 10
- 제안자 : 영등포구청장

■ 개정(제안) 이유

- 「주차장법」에 의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주차장확보율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기준을 규정하고, 전용주차구획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노상주차장 인근주민 및 상근자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함

■ 주요골자

-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결과 주차장확보율이 70%미만인 조사구역 또는 주차환경이 열악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이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1조의2 제①항)
-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지정·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결정한 해당 조사구역 사업에 예산을 우선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1조의2 제②항)
- 주차장법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노상주차장 인근주민 또는 상근자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는 내용 보완(안 제5조의2 제④항)

■ 관련법규

- 「주차장법」 제4조·제4조의2·제4조의3·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
-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·운영계획 [서울특별시 주차계획 담당관 -7700(2008.5.30)]

■ 타 자치단체 조례개정 현황

- 없음

■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4조(2003.12.31) 및 서울특별시의 주차장 환경 개선지구지정·운영계획 [주차계획 담당관-7700(2008.5.30)] 에 의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결과 주차장확보율(주차단위구획수/자동차등록 대수)이 70%미만인 조사구역이나 주차환경이 열악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이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
-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구역에는 담장 허물기 사업,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사업,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·공원지하주차장 건설, 민간주차장 설치 자금융자 등을 우선하여 지원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8. 9. 23

보 고 자 : 이 남 식

참고자료 : 관련법령

관 련 법 규

■ 주차장법

제4조(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) ①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지역안의 조사구역으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확보율(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.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별도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의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)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이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
2.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은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·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결정한다.

③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, 매년 주차장 수급실태의 개선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. [본조신설 2003·12·31]

제4조의2(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·관리계획) 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·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구역 및 지정의 필요성
2. 주차환경개선지구의 관리목표 및 방법
3. 주차장의 수급실태 및 이용특성
4. 장단기 주차수요에 대한 예측
5. 연차별 주차장 확충 및 재원조달 계획
6. 노외주차장 우선 공급 등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

②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·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·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③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·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 [본조신설 2003·12·31]

제4조의3(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)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,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 [본조신설 2003·12·31]

제10조(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등) ①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. 다만,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제한조치에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. [개정 2003·7·29, 2005·5·31, 2008·2·29]

1.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제한
2. 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
3.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. [전문개정 95·12·29]

주차장법시행규칙

제6조의2(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) ①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
2.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간으로서 인근이용자의 화물자동차를 위한 경우
3.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
4. 기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[본조신설 96·6·29]